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4-13호

「강릉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 강릉시의회의장

# 강릉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풍수해 피해로부터 강릉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과 시민의 책무(안 제1조~제4조)
- 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과 예산지원 사항(안 제6조~제8조)
- 라. 협력체계 구축·운영 및 홍보관련 사항(안 제9조~제10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033-640-4033)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rhdchfhd@korea.kr
- 팩 스: 033-640-4070

- 붙임 1. 강릉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강릉시 조례 제 호

## 강릉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각종 풍수해의 피해를 예방하고 강릉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차수관 등의 장치를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소규모 상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관리인”이란 주택·상가 등의 소유자, 점유자 및 임차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 성

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입은 피해 상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

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의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규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 건	비 고